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공유재산법」을 위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3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행정대집행

- 공고명: 「공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법」 위반에 따른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3. 6. 13. ~ 2023. 7. 5.(22일간)
- 법적근거: 「공유재산법」 제83조,
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 내지 제7조 등
- 공고방법: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
- 공고대상 및 내역

행위자	소재지	무단점유 내용	점용면적	비고
미상	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10-3	평상, 천막 설치	19.25㎡	-

- 지시 및 고지사항
 - 2023년 6월 12일(월)까지 위 점용물을 자진 원상회복(철거)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되지 않아 「공유재산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우리 서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아울러,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)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)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(☎ 032-560-44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